

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 외 13명

2. 제안이유

- 모성·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임신·출산·양육을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임신부의 날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출산축하금, 지원대상,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출산축하금 지원안내,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- 출산축하금 환수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3조, 제3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5, 제11조, 제15조의18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9조, 제10조
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
-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9조, 제41조

○ 부서검토: 건강증진과 의견제출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○ 기 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모성·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구미시민의 건강한 임신·출산·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저출산현상의 심화로 전국의 출산 지원 정책이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인 구미시의 위상에 걸맞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적정한 조례로 판단됨.

- 구체적으로 구미시 출산축하금액을 확대하고, 기존의 모자 보건사업을 모자·부자 보건사업으로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